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20년 1월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종목	세목
무배당 (①) 목회자 (②) 복지 (③) 연금보험	적립형
	거치형

※ 동 상품은 상품 명칭에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①) 또는 (②) 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2.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금지급형태,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금지급형태, 보험기간 및 가입나이

구분		내용	
연금지급개시나이(Y)		45 세 ~ 85 세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 [10년 보증형, 20년 보증형, 30년 보증형,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Y))년) 보증형] 확정연금형 [10년 확정형, 20년 확정형, 30년 확정형,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Y))년) 확정형]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Y)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Y) 연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연금지급개시나이(Y) 연계약해당일부터 확정연금의 최종 지급일까지
가입나이	일시납	20 세 ~ (Y-3)세 (최대 80 세)	
	5년납	20 세 ~ (Y-7)세 (최대 70 세)	
	7년납	20 세 ~ (Y-9)세 (최대 70 세)	
	10년납 이상	20 세 ~ (Y-납입기간)세 (최대 70 세)	

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적립형	거치형
보험료 납입기간	5/7/10년납 이상	일시납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일시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 적립형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한다. 10 만원을 최소보험료로 한다.
1 구좌 기준: 10 만원이상 100 만원 이하로 한다.
- 거치형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한다. 1,000 만원을 최소보험료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 적립형 : 보험기간 중 '연금개시나이-2 세' 연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 또는 보험료납입종료 이후기간 중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
1 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1 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

※적립액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

- 거치형 : 보험기간 중 '연금개시나이-2 세' 연계약해당일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의 총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추가납입보험료 총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

※적립액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적립형에 한함)

- 가. 기본보험료가 30 만원을 초과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점에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기본보험료에서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을 할인하여 영수하는 방법(할인형) 또는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하는 방법(가산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매월 기본보험료	보험료 할인금액
30 만원 초과 50 만원 이하	기본보험료 중 30 만원 초과부분의 0.8%
50 만원 초과 70 만원 이하	1,600 원 + (기본보험료 중 50 만원 초과부분의 0.9%)
70 만원 초과	3,400 원 + (기본보험료 중 70 만원 초과부분의 1.0%)

- 나. 할인형을 선택한 경우 '가'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할인하여 영수한다.

- 다. 가산형을 선택한 경우 '가'에 따른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을 기본보험료 실제 납입일(선납을 할 때에는 해당 납입회차 월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다.

- 라.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의 변경, 기본보험료의 감액 등을 이유로 기본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 기준으로 '가' 내지 '다'를 적용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 가.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된 이율로 적립하며, 해당보험료 납입해당 일에 대체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 29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0. 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인출 최고한도는 인출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하고,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출 후 적립액이 적립형의 경우 1구좌당 200만원, 거치형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15%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
- 나. 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 및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 및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인출할 수 있다.
- 다. 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보장계약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다.
- 라.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가'의 해지환급금은 적립액 인출 당시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잔여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동안의 월대체보험료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가. 이 보험의 연금계약에 적용하는 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나. '가'의 공시이율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한다.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한다.
- 다.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 (1)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text{내부지표} \times (1 - \alpha) + \text{외부지표} \times \alpha$$

(2) 내부지표

- (가) 내부지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내부지표}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times 100$$

- (주) 1. I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수익
 2. E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비용
 3. A_{12} : 산출시점 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A_0 : 산출시점 직전 1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나)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 (다) 내부지표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의 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3) 외부지표

- (가) 외부지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 = \text{국고채(5년)수익률} \times \beta_1 + \text{회사채(무보증 3년, AA-)수익률} \times \beta_2 + \text{통화안정증권(1년)수익률} \times \beta_3$$

- (주) 국고채 가중치, 회사채 가중치, 통화안정증권 가중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eta_1 : \text{국고채 가중치} = \frac{a}{a + b + c}$$

$$\beta_2 : \text{회사채 가중치} = \frac{b}{a + b + c}$$

$$\beta_3 :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 = \frac{c}{a + b + c}$$

- a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b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c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 (나) 국고채(5년) 및 회사채(무보증 3년, AA-)와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 (다) 세부 지표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4) 내부지표와 외부지표의 가중치

-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의 가중치}(\alpha) = \frac{A/B + C}{A + C}$$

$$\text{내부지표의 가중치}(1 - \alpha) = 1 - \frac{A/B + C}{A + 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라.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한다.

마. '나'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나'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바.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영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영세칙을 따른다.

사.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이전에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확정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도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다. 계약자는 '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14.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제도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시점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다.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일시중지 제도 신청 가능 시점
5년납	3년
7년납	4년
10년이상(다만, 전기납 제외)	5년
전기납	신청불가

나. '가'의 경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납입기일은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된다.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에 따라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나이가 연금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완료시점 이후 최초로 돌아오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된다.

다.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차감이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보험료의 차감이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 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라.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신청가능횟수는 총 5회를 한도로 하며, 1회 신청당 12개월(최소 3개월)을 최고 한도로 한다. 또한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은 누적하여 36개월(기본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의 신청은 월단위로 가능하다.

마.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바. 회사는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신청으로 인한 월대체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더 이상 차감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돌아오는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5. 보험료 납입종료 제도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50%가 지난 이후(보험료 납입경과 월수 기준)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회사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나. '가'에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할 수 없다.

- (1)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2)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제도를 1회 이상 신청한 경우
- (3)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 후 취소하거나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종료가 종료된 경우
- (4)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향후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충당할 수 없거나 1구좌당 200만원 미만인 경우

- 다. '가'에서 정한 회사에서 정한 사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할 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퇴직: 퇴직증명서
 - (2)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 (3)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 입원확인서 또는 퇴원확인서
- 라.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종료 제도를 신청한 시점부터 연금지급개시전일까지의 기간(이하 '보험료납입종료이후기간'이라 합니다)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
- 마. 계약자는 '가' 내지 '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한 후 3년 이내에 보험료 납입종료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종료는 그 때 종료된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종료 제도를 신청한 시점부터 신청취소일까지의 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사'에서 정한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 바. 회사는 보험료납입종료이후기간 동안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차'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한다. 단, 보험료납입종료이후기간 중 '차'에서 정한 금액의 차감이 불가능할 경우 보험료 납입종료는 그 때 종료된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한 시점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사'에서 정한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 사. '마' 또는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종료가 신청취소 또는 종료된 이후의 최초 보험료 납입기일은 신청취소 또는 종료된 후 최초로 다가오는 월계약해당일로 연기되며,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 납입기일이 연기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 아. '마' 또는 '바' 따라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된다.
- 자. 회사는 보험료납입종료이후기간 중 '차'에서 정한 금액의 차감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금액의 차감이 불가능한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종료의 종료['차'에서 정한 금액이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더 이상 차감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 차. 회사는 보험료납입종료이후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보장계약보험료, 기본보험료의 계약 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차감한다.
- 카. 보험료 납입종료 신청 이후에는 '차'에서 정한 금액을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은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다.

16.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계약자의 신청에 따른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17.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 적립형 : 기본보험료 × 12 × Min(보험료 납입기간, 10)
- 거치형 : 기본보험료

다. 연금지급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 (2) 변경가능한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	10년보증, 20년보증, 30년 보증, 100세보증
확정연금형	10년확정, 20년확정, 30년 확정, 100세확정

마.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바. 가입대상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피보험자는 목회자, 목회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사.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온라인채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하며, 보험업감독규정 제 4-14 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제외한다.

아. 생존연금(종신연금형) 지급에 관한 사항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

자.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

회사는 보험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차감금액과 기본보험료의 차감금액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차. 추가납입보험료의 자동이체서비스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첨 제 1 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2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3 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청약서의 서식